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세제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김 재 희

2009 년 8 월

#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세제 개선방안

지도교수 김 길 훈

김 재 희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재희의 회계학과 회계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년 8월

The Improvement plans of Inheritanc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im, Jae 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Gil H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4
제1절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	4
제2절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 .....	5
1. 상속·증여세 개요 .....	5
2.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	9
2.1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의 변천과정 .....	9
2.2 가업상속공제 규정 .....	12
2.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2
제3절 외국의 상속과세제도 .....	30
1. 미국 .....	30
2. 독일 .....	31
3. 일본 .....	33
4. 영국 .....	35
5. 프랑스 .....	35
6. 비교·요약 .....	36
6.1 세율구조 .....	37
6.2 가업상속공제제도 .....	37
6.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 .....	37
6.4 연부연납제도 .....	38
6.5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	3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39

Ⅲ.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
제1절 세율구조 .....	42
제2절 가업상속공제제도 .....	44
제3절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 .....	45
제4절 연부연납제도 .....	47
제5절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	48
Ⅳ. 요약 및 결론 .....	50
<참고문헌> .....	52
<Abstract> .....	54



## I. 서론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글로벌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며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조병선·조봉현, 2007).

중소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를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경제 고도성장기의 주역인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문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와 가업승계전략 및 준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경영자가 고령화되면 회사발전이 정체되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이 지적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상속과세의 내용 또는 제도의 변화추이 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에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에 연방자본이전세(유산과세형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호주는 1977년부터 상속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입법은 EU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홍콩도 2006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sup>2)</sup>를 도

1)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07년 6월 기업 활동경력 20년 이상이고 최고경영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중소기업 18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업승계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중한 조세부담’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생전증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즉, 근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세계적인 흐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증여세부담 등 과도한 가업승계 비용으로 인해 가업승계 후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이 커서 기업을 물려받은 차세대 경영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외의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으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보유 지분을 팔아 세금을 냈을 때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소중한 무형자산이 소멸되고 일자리와 생산설비 등이 상실되어 국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가업 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상속세제와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가업승계를 제 2의 창업의 관점에서 중시하고, 가업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인 대안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가업승계 관련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EU 또한 유리한 조세정책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및 2008년에 가업승계와 관련한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있었지만 아직 가업승계 관련 조사 연구와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업상속에 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과세제도와 비교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업승계관련 상속과세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와 외국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세당국이 향후 가업상속제도 관련 입법을 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가업승

2)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을 팔 때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상속세의 기본이론,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증여세의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외국의 가업상속 관련 상속과세제도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가업승계관련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sup>3)</sup>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는 통상적으로 가업승계 중 가족적 승계를 의미하며, 가업승계보다 가업승계가 더 좁은 개념이다. 다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인 경우, 혈연 이외의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 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자녀 등 차세대 CEO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업승계란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업승계는 누가 승계를 받는가에 따라 가족적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적 승계는 소유권이 가족 간에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경영자 승계는 전문경영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M&A로 이어지므로, M&A도 가업승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가업승계의 유형은 승계의 법적수단과 형태에 따라서 상속, 증여, M&A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가업승계의 유형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M&A는 유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 배원기(2008)와 조병선·조봉현(2007)을 참고하여 정리함.

## 제2절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

### 1. 상속·증여세 개요.<sup>4)</sup>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자연인의 사망을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여 그 사망한 자연인의 유산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된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단위로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산과세형의 입법례로는 미국의 연방유산세와 영국의 상속세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을 과세단위로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취득과세형의 입법례는 독일과 일본의 상속세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산과세형처럼 유산관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각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상속세액에 대하여 각 상속인 등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에 철저히 못하고 징세편의적인 관점에서 취득과세형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수증재산가액을 기초로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과세형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유산과세형을 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합산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최종 결정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4) 임상엽·정정운(2008)과 신상철(2007)을 참조하여 정리함.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97년 이후 단일화하여 현재 동일하다. 세율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최저세율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표 1> 상속세율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sup>9</sup>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은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급여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각종 상속공제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상속공제<sup>5)</sup>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 한도
③일괄공제		5억원	
④가업상속공제		2억 이상 : Max[가업상속재산×40%, 2억] 2억 미만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0년 경영: 60억 15년 경영: 80억 20년 경영: 1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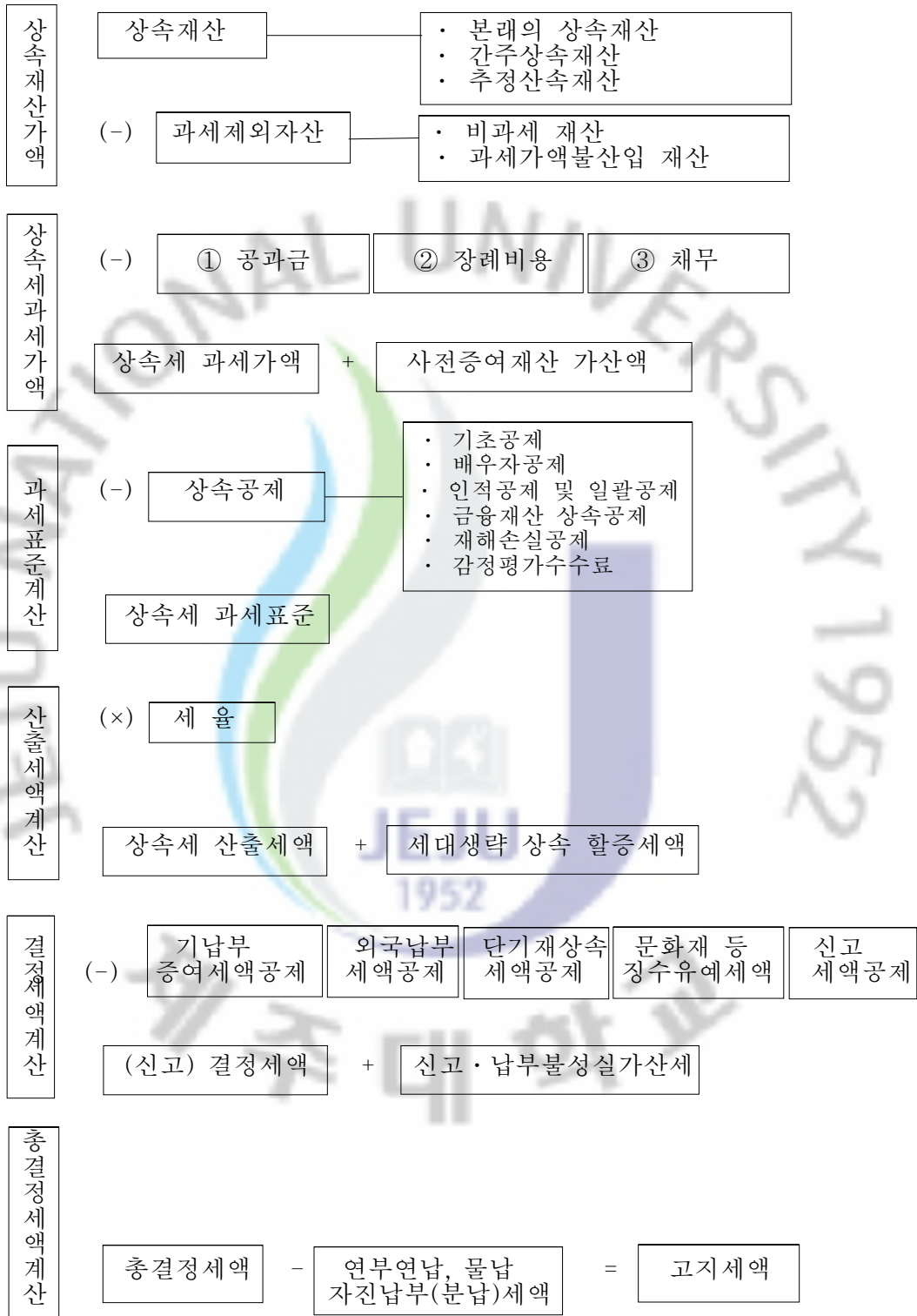
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⑤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
⑥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 잔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
⑦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①기초공제+ ②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③일괄공제 중 선택

상속세 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가산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다.

<상속세의 과세체계 ><sup>6)</sup>



6)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 2.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증여세의 규정<sup>7)</sup>

### 2.1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의 변천과정

####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설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 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08년 1.1부터 2010년 12.31. 까지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세법개정에서는 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초공제액을 종전 1억원에서 일반인에 대한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가업상속인에 대한 기초공제액은 3억원으로 개정하였다. 즉, 가업상속을 장려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가업상속인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1억원의 추가공제를 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가업상속에 대하여 1997년~1998년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1998년 12월 28일 개정하여 공제대상금액을 가업상속재산(1억원 한도)으로 한정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9년 12월 31일 세법개정에서는 가업의 일부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

7) 이텍스코리아 ([www.etaxkorea.net](http://www.etaxkorea.net))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해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함.

한다면 비가업상속인 또는 비영농상속인에게도 조세지원을 인정하는 모순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동안 통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7년 12월 31일 세법개정에서는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다소 강화하였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개정되었다.

<표 3> 가업상속공제 개정 연혁

적용기간	가업상속공제액
1997.1.1 ~ 1998.12.31	- 공제대상 :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액 : 1억원
1999.1.1 ~ 2007.12.31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2000.1.1 ~	- 가업 상속공제요건의 명확화. 즉,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인정.
2008.1.1 ~	- 공제대상 : 15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액 : 다음 중 큰 금액 ㉠ MIN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 ㉡ MIN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한편, 2008년 9월 1일 보도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



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할 예정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할 예정이었다. 동 개정(안)은 국회의결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표 4>와 같다.

<표 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세제개편 내용

개 정 전 (2008)	개 정 후 (2009)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 공제한도 : 30억원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 80%이상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input type="checkbox"/> 추정사유(10년간 사후관리) - 가업용 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10%)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확대 (사업영위기간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0년*으로 완화 *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좌 동)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input type="checkbox"/> 추정사유 보완 (좌 동)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인정

자료 :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08.9.1

## 2.2 가업상속공제 규정

### (1) 의의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7.12 세법개정시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종전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다소 강화하였다. 또한, 가업을 상속 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2008.12 세법개정시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종전의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고, 가업상속공제율도 확대하여 종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40%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한도도 확대하여 종전의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1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상속인, 중소기업의 요건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상증령 15 ④).

## 가.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최대주주 등의 요건

피상속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상장 중소기업은 40%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이상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상증령 15 ③).

상기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 1인과 다음과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인 비영리법인

⑤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인 비영리법인

⑥ ① 내지 ③의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⑦ ① 내지 ③의 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⑧ ① 내지 ③의 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⑨ ① 내지 ③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⑩ ① 내지 ③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⑪ ① 내지 ③의 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요건

- ①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하여야 한다(상증령 15 ④).
-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10년 이상 영위하던 기업이 아니면 적용될 수 없다(상증법 18 ①).

## 나. 상속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속인이어야 한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① 및 ②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 다. 중소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 때 “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의 기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5, 조특령 2 ①)

1)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사업(영농, 양축, 영어 및 영림)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업종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업종 비교

표준산업 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분류	중·소분류		현행	개정
1. 농업 및 임업	작물재배업(11)	○	×	×
	축산업(12)			
	조경수 식재 등	×		
2. 어업	어업전체	○	×	×
3. 광업	광업 전체	○	○	○
4. 제조업	제조업 전체	○	○	○
5. 전기·가스·수도사업	업종전체	×	○	×
6. 건설업	건설업전체	○	○	○
7. 도매 및 소매업	도매업 전체	○	○	○
	소매업 전체	○	○	○
8.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관광진흥법)	○	○	○
	일반 숙박업 등, 음식점업 전체	×	일부제외	음식업포함
9. 운수업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예선업	○	○	○
	선박관리업(63929)(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업			
	여행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			
	주차장운영업 등	×	○	×
10. 통신업	전기통신업(642)	○	○	○
	우편·소포송달업(택배, 퀵)	×	○	×
11. 금융보험업	업종전체(은행, 보험, 증권 등)	×	○	×

12.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파렛트임대업 (기타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중) * 물류산업에 해당	○	×	○
		그 외	×	×	×
그 외 전체		×	×	×	
13. 사업 서비스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72)	○	○	○	
	연구·개발업(73)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과학·기술서비스업(744)				
	광고업(745)				
	전문디자인업(746)				
	포장 및 충전업(7593)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해당	×	○	×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무·회계서비스업(741)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사진촬영업, 번역 등(749) 사업시설유지관리, 인력공급(751) 등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전체	×	×	×	
15. 교육 서비스업	기술계학원(809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업종전체(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	○	×	
16. 보건·사회복지사업	의료기관운영업(의료법에 의한)	○	○	○	
	노인복지시설운영업(8611)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	○	×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영화산업(871)(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및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은 제외	○	○	○	
	방송업(872)				
	공연산업(873)(자영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881)				
	관광사업(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제외)	×	일부제외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	
	도서관·박물관(882), 경기장운영업(883)(골프장, 스키장) 기타오락관련(889)(게임장,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등)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폐수처리업(수질환경보전법)			
	분뇨등 관련사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회원단체(91), 수리업(92)(자동차정비제외) 기타서비스업(93) (이·미용, 욕탕·세탁업, 음식점, 점술업 등)	×	일부제외 (안마업)	×
19.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요리사, 가정부, 파출부등)	×	○	×
2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 등	×	×	×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문답자료 중 발췌

## 2) 규모의 기준

제조업·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 (3) 가업상속 공제액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가.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18 ②).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상증령 15 ⑤).

- 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개인기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②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법인기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4)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 상속세의 추정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제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가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즉 가



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법 18 ⑤).

-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 당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할 때 실권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나. 가업용 자산의 범위

상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용 자산”이라 함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상증령 15 ⑥).

- 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의 경우 : 가업상속재산
- ②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의 경우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

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다. 사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사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상증령 15 ⑦).

-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의 가액
- ② 사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라. 상속세 추징 제외대상

사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자산의 20%(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15 ⑥).

- 1) 해당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사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사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5)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조세특례 27조의 6 ⑧).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2.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 입법취지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과세특례적용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30의 6 ①).

#### 가. 증여자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증여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 1) 최대주주의 요건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50%(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증령 19 ②). 따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증여자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 나. 수증자의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다. 또한 증여당시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 다. 중소기업의 주식 요건

중소기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상증령 15조 ①).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일정한 업종요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 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의료업 등 구체적으로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조특령 2조 ①).

## 2) 종업원 등 요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2조 ① 1 및 동항 단서).

## 3)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때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 라. 증여기한의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의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는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한다(상증령 23조 ②).

### 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

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단 한 번의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여러 차례의 증여도 포함 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상증법상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분납은 가능하다.

#### (4) 증여세의 부과

##### 가. 증여세의 부과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기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기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제 30조의 6 ②).

##### 나. 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다. 기업을 승계 후 증여세의 부과

###### 1) 휴업이나 폐업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특령 27의 6 ⑤).

①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

거나 10년까지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2) 수증자의 지분 감소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특령 27의 6 ⑥).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 · 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 · 사업 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 3)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27의 6 ③).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을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이자상당액} = \frac{\text{결정한 증여세액}}{\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times \frac{\text{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 \times \frac{3}{10,000}$$

(5) 기타규정

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된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조특법 30의 6 ③, 30의 5 ⑧).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의 증여에서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조특법 30의 6 ③, 30의 5 ⑧).

2) 상속공제의 한도특례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상증법 24). 그러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주식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6 ③, 30의 5 ⑧).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만일 주식 등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식 등의 증여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나. 주식 등의 증여와 일반증여는 합산과세 배제

상증법상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 ②).

그러나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 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6 ③, 30의 5 ⑧).

이는 일반증여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 등의 증여의 경우, 공제금액과 적용세율이 다르며 만일 일반증여와 주식 등의 증여를 합산한다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배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조특법 30의 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6 ⑤).

#### 라. 주식증여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 1) 입법취지

상속에 의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로서 최고 100억원을 허용한다면 납세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창업자의 사망시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가업의 승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주식증여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의 경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 2) 주식증여 이후 상속개시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27의 6 ⑧).

- ①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증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3)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이 주식의 증여시점 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 마.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장·합병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증법 제41조의 3(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

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또는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 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 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 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조특령 27의 6 ⑦).

### 제3절 외국의 상속과세제도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계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영속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미국

미국의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제로는 적격소규모 사업용 자산의 비과세 조치(QFOBI: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 exemption)가 있다. 사업용 자산에 관한 상속세 경감조치로서 1997년 도입하였으며, 사업용 자산에 관련한 상속세에 대하여 130만 달러까지는 비과세로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비율 50% 초과하여야 하고(상속 전 3년간 비상장 일 것), 둘째, 상속 전 8년 중 5년 이상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상속 이후 10년 동안, 연속하는 8년 중 5년 이상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며,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미국세청이 별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 할증률은 법령이나 통첩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세청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해서 유사 기업 경영권 매매 사례를 감안하여 평가액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에 한시법 형태이긴 하지만 매년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sup>8)</sup>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에 따라 2009년 현재 일반 상속공제액이 350만 불이며, 최고 한계세율은 45%다. 그러나 동 법안은 2010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다시 2001년 이전의 원래수준으로 부활될 예정이다.<sup>9)</sup> 증여세는 2010년 이후에도 존속하며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세율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본이득 산정시 무상취득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상속세 등과 함께 폐지하고 수정취득가액승계제도(modified carryover basis)<sup>10)</sup>를 도입한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자본이득 과세를 하지 않고, 무상 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과세를 한다는 의미이다.

## 2. 독일

독일의 상속세율은 7~50%의 누진구조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관계(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세율구조를 달리 하고 있다. 즉, 배우자 및 자녀 등 제1등급에 속한 경우 7~30%, 형제·자매 등 제2등급에 속한 경우 12~40%, 기타 제3등급에 속한 경우 17~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독일의 최고한계세율은 50%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야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은 30%로 낮아진다.

기업 상속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파트너회사 지분, 주식회사의 지분 중 25%이상의 지분의 경우에는 225,000유로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동시에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의 35%를 추가로 공제해

8) 2002년에는 최고세율이 50%였으며 최고세율은 2001년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최고세율은 2003년에는 49%,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47%, 2006년에는 46%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45%이다.

9) 이성봉, 기업 상속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2008, p.172.

10)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인자 양도할 때의 자본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상이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과세가 폐지되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상이전한 자(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켜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carryover basis for certain property acquired from a decedent dying after December 31, 2009)

준다.

수혜 대상기업의 주요 요건으로 자본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비율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속 이후 5년 동안 사업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분의 상속 전 보유기간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 상속의 경우 세율적용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다.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율은 앞서 설명한 근친관계에 따른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용 자산, 인적회사의 지분 및 25% 이상의 지분율이 있는 자본회사 지분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촌수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상속인 제1등급의 세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다른 일반상속재산과 비교해서 기업 상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이중신탁을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경영권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1)</sup> 이중신탁제도는 공익목적의 신탁재단과 가족신탁재단을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본회사의 출자자로 공익신탁재단과 가족신탁재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된다. 대체로 공익신탁재단이 동 자본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지만(예를 들어 90%)의결권은 아주 낮게(예를 들어 10%) 갖는 방식임. 그러나 이익 수취권은 대부분 공익목적의 신탁재단과 가족신탁재단이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재산과 수익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재산의 50%이상을 공익목적의 신탁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자들로 구성된 가족신탁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50%이상을 공익목적의 신탁재단에 출연하더라도 동 출연은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의 사회 환원이 아니며, 단순히 동 주식의 미래 배당금 등의 50%이상의 공익목적 사용을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경영권은 대부분 가족신탁재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업승계와 관련된 이상의 상속세상 혜택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기업승계 관련 입법 동향은 2008년 1월 4일 상속세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고, 2008년 12월 5일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 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2009년 1월 시행).

기업승계 촉진(facilitation of company's succession)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11) 이성봉, 기업 상속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2008, p.174.

은 다음과 같으며, 새로운 상속세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2가지 규정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12월 주요국의 조세 동향 (2)).

제1대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후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사업자산의 85%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① 승계 자산이 승계 후 7년간 사업에 사용될 것
- ② 가업승계 후 7년간 급여합계가 승계하는 과세연도 급여합계의 650% 이상일 것
- ③ 승계 사업자산 중 수동자산(예를 들어, 임대자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업승계 후 7년 내에 사업을 종료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는 급여합계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그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한편, 사업이나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특정 요건에 따라 관련 자본이득을 재투자하면 공제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2안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신 상속세 전액을 과세면제 하는 것이 선택 가능하다.

- ① 승계사업이 가업승계 후 10년간 계속될 것
- ② 가업승계 후 10년간 급여합계가 승계 과세연도 급여합계의 1000% 이상일 것
- ③ 승계 사업자산 중 수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 일본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세율은 10%, 최고세율은 50%에 이르는 6단계 초과누진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업 상속과 관련한 경감혜택으로는 소규모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혜택이 있다. 소규모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특례 제도는 400m<sup>2</sup>이하의 소규모 사업용 토지의 경우 평가액의 8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기타 사업용 택지의 경우는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기업 상속과 관련하여 일부 경감조치만을 갖고 있던 일본은 2008년 7월 16일에 총리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를 열고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특례 도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

으며 동법에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에 대해서 대폭적인 경감조치가 포함되었다.

핵심 내용은 상속인이 가업상속자로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2/3의 80%의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이연해주는 것이다. 납부가 이연되는 상속세 금액은 동 상속인이 동 기업의 주식만 상속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에서 동 상속인이 동 기업 주식의 20%만 상속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동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10% 경감조치는 과도기적 적용과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상속세 특례 가업상속의 조건은 가업상속인과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주식 등에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업상속인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산산업성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의 50% 이상을 다른 가족 상속인과 함께 보유해야 하며, 동시에 동 기업의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은 상속시점에 동 기업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족과 함께 보유해야 하며, 가업상속인을 제외한 지분보유가족들 중에서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셋째, 상속되는 모든 주식이 증권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납부가 이연된 상속세는 일정조건(대표적으로 가업상속인이 사망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기간까지 상속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기일이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동 회사의 운영을 종료할 경우(예를 들어 가업상속인이 최고경영자를 사임하는 경우 등) 이연된 상속세와 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편, 5년 이후의 기간에도 상속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식에 대한 납부이연 상속세와 관련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도에서는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3천만엔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과세 후 상속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의 구체적 조건은 발행주식 등의 총액이 20억엔 미만인 회사로서, 수증자가 대표자이고, 주식 등을 50%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다. 상속시 정산은 증여시의 시가로 증여재산과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동 제도는 세대교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및 고용안정·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시행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 4. 영국

영국은 사업용 자산의 승계시 경감조치(BPR: Business Property Relief)를 실시하고 있다. 1976년 도입(경감비율 30%)되어, 1992년에 중소기업진흥 관점에서 대폭 확충하여 실시하고 있다.<sup>12)</sup>

사업체, 사업체 관련 지분 및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100% 상속가액에서 감액하고 있다. 즉 사업체 관련 지분의 경우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지분(의결권의 50% 이상)의 경우 가액의 50%를 상속재산 평가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감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동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증여자가 생전증여 후 7년 이상 생존해 있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PET : Potentially Exempt Transfer)를 실시하고 있다.

#### 5.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기업상속에 관한 상속세 경감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용자산에 관한 상속세 경감조치를 2000년에 도입하여 50%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 요건을 완화한 이후 2005년에는 경감비율을 75%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상속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속재산의 75%를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① 해당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법인의 34%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의 법인에 적용되며,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6년간 그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④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은 그 법인의 활동(파트너십의 경우는 주된 활동,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경영)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① 무상으로 피상속인에 의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②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적어도 6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③ 가업승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5년간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반면 증여에 의해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75세 이하인 경우에는

12)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2007, p.62.

30%,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공제한다.

## 6. 비교 및 요약

한국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를 비교한 표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한국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개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세율	10~50%	18~45%	7~50% (직계비속: 7~30%)	10~50%	40%	5~40%
공제 및 감면	가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40% (공제한도: 60억~100억원)	사업용자산: 130만 달러 까지 비과세	(기본공제 차감 후) 상속재산가 액의 35% 추가공제	-소규모사업용 토지: 80% 감면 -기타사업용 택지: 50% 감면	-비상장주식 : 100%경감 -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 50% 경감	사업용자산 : 75%경감
할증평가	경영권 있는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 (중소기업은 2009년까지 유예)	비상장주식에 만 적용하고 국세청에서 할증규모결정 유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분납	3년(2년)거치 후 12년(5년)간			20년간 분납		5년 또는 10년간 매 6개월에 1/20씩 분납
상속세 감면제도	없음	없음	매년 10%씩 상속세 감면	없음	없음	없음
비고		매년 상속공제를 확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이중신탁 활용	비상장주식형 태의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관련 상속세의 80% 납부이연		

## 6.1 세율구조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비교대상국가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상속공제를 확대하여 왔고, 2009년 현재 최고세율은 45%이다.<sup>13)</sup> 독일의 최고한계세율은 50%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야 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은 30%이며, 프랑스의 경우 40%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비상장회사 등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지분이 50%가 넘으면 과세표준의 절반을 감액해 줌으로써 실질세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 6.2 가업상속공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추가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상속세 경감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위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 공제 차감 후 35%를 추가로 공제해 주어 확대된 상속공제의 허용과 경감세율의 적용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업체, 사업체 관련 지분 및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100%를 상속가액에서 감액해 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75%의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 6.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

비교대상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통해서 경영권 승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독일은 할증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있고, 그 할증률은 법령이나 통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기업 경영권 매매사례”를 감

13) 미국은 2001년에 매년 상속공제를 확대하여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동 법안은 2010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다시 2001년 이전의 원래수준으로 부활될 예정이다. (이성봉, 2008)

안하여 국세청에서 할증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경영권이나 가업 상속을 다른 재산의 상속보다 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자산의 75%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영국은 사업체, 사업체 관련 지분 및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100%를 상속가액에서 감액(상장회사는 50%를 감액)하고, 독일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35%를 경감하고 있다.

#### 6.4 연부연납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분할 납부기간이 외국에 비해 기간이 짧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수익도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6.5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독일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과도기에 해당 기업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당해 기업 종업원의 일자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상속세제 개혁이 추진되어 독일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08년 12월 5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간접적 업무용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상속 후 10년간 경영하며 종업원 수를 100%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간접적 업무용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을 상속 후 7년간 경영하며 종업원 수를 93% 유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85%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상속·증여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속과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상속세제의 개선방안 등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반면 가업승계 또는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상속세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송한수(2006)는 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이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주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으며,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크게 회의를 품고 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유치 및 기업의욕 고취 등을 위해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종범(2006)은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최고세율을 계속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실제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 혜택을 받은 후에도 10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며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하면 안된다는 요건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영위기간은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DB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가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10%감소는 정상영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사후요건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봉(2008)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고, 주요 국가에서 가업 상속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업상속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사업영위기간 등 가업상속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승필(2008)은 비교적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기업지속 시 감면제도의 요건완화, 세액공제의 확대, 누진세율의 조정,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세납부를 위한 금융지원을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요건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로서 상장기업은 40%이상, 비상장기업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이 가족 중심의 분할소유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식보유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상속주식의 30%(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20%)를 추가로 할증 부담하고 있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하고 할증과세폐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봉(2008)은 가업 상속과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가업 상속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업 상속 관련 조세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의 결과 한국은 가업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이 있는 주식 등을 상속할 때 '할증과세'로 인하여 한국은 경영권 이양 등 가업상속에서 불리한 입장이며 선진국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계속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경영권 유지를 보장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할증과세’의 도입 취지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이미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도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할증과세의 유지근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관련 상속세제에서 우선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인학(2008)은 우리나라 기업 상속과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 할증과세, 포괄주의과세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세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세금 징수 규모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속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조세 인프라를 확충한 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할증과세 제도가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신상철(2007)의 연구에서는 현행 상속과세제도 현황 및 세수 규모 분석, 주요국의 상속과세제도 비교 분석, 상속을 앞둔 승계예비기업의 승계비용 추계 및 주요국과의 비교·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승계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속과세 관련 세제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되어 승계 관련 과중한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고, 가업승계 비용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하여 할인평가 제도의 도입 및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을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상속과세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정상적’ 가업승계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상속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의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대폭적인 경감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초점을 두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에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과세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상속세 세율구조

##### 1. 문제점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최고세율 50%는 지난 10여 년간 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결과이다. 1996년까지 40% 이던 최고세율이 1997년부터 50%로 높아졌고, 2000년의 개정에서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고세율이 상승한 효과가 있었다.

<표 7>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 구조 변화

1996.12.3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 상속세 · 5,000만원 이하 10% · 2억 5,000만원 이하 20% · 3억 5,000만원 이하 30% · 5억 5,000만원 초과 40%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5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증여세 · 2,000만원 이하 10% · 1억 5,000만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40%		

송한수(2006)의 연구에서도 기업들이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안중범(2006)과 황인학(2008)의 연구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4)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6.3%이다.(기획재정부, 2008년 세계개편(안) 문답자료, 2008.9.1)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덴마크,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증여세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지 않고, 캐나다·호주와 같이 상속·증여세가 없고 소득세만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독일, 터키, 벨기에,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 등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율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8>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 영국 (40%) · 프랑스 (40%)	· 독일 (30%) · 터키 (30%) · 벨기에 (30%) · 아일랜드 (5%) · 네덜란드 (27%)등	· 한국 (50%) · 일본 (50%) · 미국 (45%) · 덴마크 (36.25%) · 스페인 (34%)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세계개편(안)” 보도자료, 2008.9.1

## 2. 개선방안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현재의 50%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목적인 최고한계세율인 50%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오히려 인상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의 평가할 경우에 10%~3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세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세율은 일정한 수준까지 인하하여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최소한 소득세의 최고수준인 35%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높은 누진세율에 의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가업상속공제제도

### 1. 문제점

현행 가업상속공제액에 있어서 2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범위 내에서 한도를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 80억원,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도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가업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의 부담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할 때 우선 공제를 받는 금액이 225,000유로로서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공제 후 과세부분에 대해서 35%의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업용 택지에 대하여 80%의 감면을 제공하여 일반 상속세 과세가격의 20%로 평가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75%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제금액은 부족한 감이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된 요건이다. 대표이사는 여러 사유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개선방안

가업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 획득과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 전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의 승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상향조정하고, 가업상속재산의 50% 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인상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된 요건이다. 피상속인이 꼭 대표이사 직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제3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제도

#### 1. 문제점

현재 한국의 상속세 대상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은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sup>15)</sup>

이와 같은 경영권 할증평가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15)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을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1조).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때 도입되었다. 즉,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증과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률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기업 등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상속세액이 30억을 초과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납부세율이 10~15% 할증됨에 따라 세율은 최고 65%까지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의 경우 대부분이 최대주주의 경우가 많으며, 창업주가 중심이 된 가족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2.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는 상속세 할증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근거도 불충분하고 정확한 평가도 어려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개념을 토대로 할증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은 아예 할증제도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있고, 그 할증률은 법령이나 통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기업 경영권 매매사례”를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할증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경영권이나 가업 상속을 다른 재산의 상속보다 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자산의 75%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업체, 사업체 관련 지분 및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100%를 상속가액에서 감액(상장회사는 50%를 감액)하고, 독일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35%를 경감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 평가에서 할증평가 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 제4절 연부연납제도

### 1. 문제점

가업승계시 상속세의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세담보를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이월해주는 제도이다.

연부연납 허용기간은 일반재산 상속세 5년,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7년(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15년(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하고 있다. 일시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동안 가산율<sup>16)</sup>을 1일 9.3/100,000 (연 3.4%)로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연 10~10.95%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분할 납부기간이 외국에 비해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수익도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 2. 개선방안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연부연납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sup>17)</sup>

또한 현행 규정과 같이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보다는 기업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연부연납기간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16) 가산율이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17) 일본의 경우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제5절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독일의 경우처럼 기업이 가업승계 후 상속받은 기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률(10%)씩 감면하고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10%씩 감면하여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적합한 승계자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 중단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업승계 문제를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는 가족기업의 기업철학과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기업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며 기존의 일자리 유지 또는 확충에 자금을 동원한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승계 과도기의 어려운 시기에 해당기업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발생하므로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상속세 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은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가업승계 시점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납부를 유예하고, 가업승계 이후 매년 경영성과(성장률, 고용유지, 투자 등)를 평가하여 매년 일정비율씩 세금을 감면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원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승계 이후의 활동조건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가업승계 성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전파한다면 가업승계가

18) 조병선·조봉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7, p.255.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9>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요약

	현행	개선방안
상속세율	최고세율: 50%	35%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가업상속공제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40% - 공제한도: 60억 ~ 100억	- 가업상속재산의 50% - 공제한도 인상 또는 한도폐지
할증평가	중소기업 : 10%~15% (2009년까지 유예)	폐지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 7년 ~ 15년	10년 ~ 20년
상속세 감면제도	없음	가업승계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10%씩 감면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우리나라 상속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 세율은 최소한 소득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이 확대되어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도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경영권이나 가업상속을 다른 재산 상속보다 오히려 우대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는 주식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분할 납부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수익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부연납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처럼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어야 기업경영인에 의한 불법·편법 상속의 관행이 없어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투자가 집행되며, 이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및 부의 창출이 가능하여 이익금이 사회 환



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비교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제개선방안이 조세형평 등 조세정책 및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는 지는 불명확하다. 향후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영자의 세대교체 경험이 많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창업에 준하는 중요한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존기업의 폐업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져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은 가업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 경제 안정성 제고, 고용 안정 등 긍정적 시각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종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기획재정부, “2008년 세계개편(안)” 보도자료, 2008.9.1
- \_\_\_\_\_, “2008년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문답자료” 보도자료, 2008.1.15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정부 세계개편(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2007.8
- 배원기, 「가업승계의 기술」,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2008
- 안중범, 기업관련 상속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6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이성봉, “기업 상속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한독경상학회, 2008년 9월
- 이용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8
-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12월 주요국의 조세동향(2)」, 2008
- 송한수,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와 경영권 상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정지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조병선·조봉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 2007
-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최봉길, “중소기업사업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07

최승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연구, 2008  
황인학, 「기업의 경영권 및 가업승계 부담완화 방안」, 월간조세, 2008년 3월



<Abstract>

**The Improvement plans of Inheritanc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im, Jae Hee

Major in Accounti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09

With the quick aging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founder generation, there has been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and active social discussions on i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is not easy due to the high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other excessive expenses for passing down family businesses. In the event that it is not easy to pass down family businesses and the owner reach old ages,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 stagnates and in the worse case, it can result in closing down of the business and thus have highly advers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perceived that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are very important for the st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maintaining employment and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us, epochal policy changes are being attempted on inheritance taxes and fostering successors.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inheritance and taxes in Korea for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family businesses, while benchmarking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suggest tax system reform plans that support continued growth of companies through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Results of the study and summary of the issues and reform measures on

inheritance taxes are as seen below.

First, the current inheritance tax rate is high compared to other developed nations. This is not only unfitt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s, but the excessive taxes impedes upon savings resulting in the retardation of extended growth potential. Therefor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hould at least be lowered to the level of income taxes.

Second, from 2009,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deduction was increased and thus up to 10 billion won can be tax exempt depending on the years in business making it highly effective for smaller businesses. However, for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that are categorized as mid-sized companies, it cannot be definitely stated that it will greatly reduce the load of inheritance tax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ften the condi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exemptions and to raise its max amount. Furthermore, it would be desirable to annul this limit in the long run.

Third, in the case of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family businesses, it is typical that they are they largest shareholder. In Korea, it is deemed that there is a management right premiums for success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s stocks and therefore there are additional taxes. Meanwhile, foreign countries actually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and family businesses compared to inheritance of other properties. We should also get rid of the stock extra evaluation system that hinders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urth, the installment payment period for inheritance taxes in Korea is short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and therefore, its effectiveness is lower. Because most assets are tied down as businesses asset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ve lower cash liquidity and therefore, there is risk of smaller investments and lower profitability due to the inheritance taxes. Thus, there is a need to sufficiently extend the period for annual installment plans.

Fifth,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inheritance tax cut systems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like that of Germany. By

lessening the tax duties of companies, it can get rid of the illegal inheritance practices of company owners, promote corporate investments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which can result in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and making it possible to create jobs and wealth. Thu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rofits are returned to the society and resulting in a favorable circu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that can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reate jobs through successful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preventing closing down of existing businesse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is us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when the tax agencies legislate laws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policies in the future.

